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議會立法·法律顧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</p> <p>1. 제안이유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연구업무를 추가하는 등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입법·법률고문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</p> <p>2. 주요골자 가.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영역을 구분하여 규정함(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) 나. 입법고문의 직무로서 연구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2조제1항제3호) 다.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을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함(안 제3조)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議會立法·法律顧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입법·법률고문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,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</li> <li>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</li> <li>3.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 이라 한다)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</li> <li>4.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·처리,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</li> </ol> <p>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</li> <li>2.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</li> <li>3.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</li> </ol> <p>제3조중 “5인”을 “10인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議會倫理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발의년월일 : 1999. 3. 2. 발 의 자 : 주세단 위원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찬 성 자 : 이강욱 위원</p> <p>I. 주 문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</li> <li>2. 위원수는 12인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</li> </ol> <p>II. 제안이유</p> <p>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바, 이를 위해서 의원 각자가 지켜야 할 의원윤리강령, 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의회상을 정립시키기 위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·처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議會2002年월드컵蹴球大會 支援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발의년월일 : 1999. 3. 2. 발 의 자 : 주세단 위원 찬 성 자 : 이강욱 위원</p> <p>I. 주 문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</li> <li>2. 위원수는 12인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</li> </ol> <p>II. 제안이유</p> <p>세계 축구인의 대제전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, 대회운영, 시민참여운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, 특히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서울을 보여주</p>
--	--